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저작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황 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하여야 하는 저작물등의 불법 전송 차단 기술적조치의 내용을 보다 실효적인 수단으로 구체화하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여 불법 저작물등의 유통을 차단하고 권리자를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실효적인 불법 전송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안 제46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

기존 제호등(제목·문자·부호)의 특징을 비교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는 것에 추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적 조치를 24시간 적용해야 할 의무와 그 로그 기록을 자동 저장 및 이를 2년간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여 실효적인 기술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기술적 조치 성능평가 업무 수행 근거 마련(안 제66조제5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해야 하는 불법 전송 차단 기술적 조치의 성능평가에 대한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정보센터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4)

기술적 조치의 미차단률을 근거로 부과했던 과태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하여 실효성과 법적 명확성을 도모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련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호”를 “제3호”로 한다.

2. 제6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과하고 평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24시간 사업자의 모든 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하는 조치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술적인 조치의 운영·관리 로그기록자료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2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조치

제66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저작물등의 고유한 특징 등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의 적정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성능평가

별표 4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행위자의 동기·목적·방법,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결과,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등을 고려하여 규정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체납이 있는 경우 감경할 수 없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4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1항	경고	1,000	3,000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①법 제104조제1항 전단에서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설></u>	2. 제6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과하고 평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사업자의 모든 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24시간 상시 적용하는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제1호 및 제2호----- --
3.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u><신설></u>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술적인 조치의 운영·관리 로그 기록자료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2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조치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권리자가 요청하면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① (생략) ② 저작권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②----- 제3호----- -----. ③ (현행과 같음) 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저작물등의 고유한 특징 등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의 적정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성능평가</u>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u>가. 과태료는 아래 기준에 따라 음악, 영화, 방송, 어문저작물, 게임, 그 밖의 저작물 등 6개 분류에 의해 각각 부과함을 원칙</u>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u>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u>

<u>으로 한다.</u> <u>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2</u> <u>가지 분류 이상인 경우에는 중</u> <u>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금액</u> <u>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u> <u>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u> <u>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u> <u>할 수 없다.</u> <u>다. 과태료 부과 처분 시점으로</u> <u>부터 2개월 이후의 동일 분류</u> <u>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u> <u>의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를</u> <u>부과할 수 있다.</u> <u>라.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행위</u> <u>자의 사업규모, 불법복제물 등</u> <u>의 차단 노력 정도, 위반의 동</u> <u>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u> <u>등을 고려하여 가목부터 다목까</u> <u>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기준의 2</u> <u>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u> <u>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u>	<u>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u> <u>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u> <u>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u> <u>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u> <u>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u> <u>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u> <u>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u> <u>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u> <u>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u> <u>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u> <u>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u> <u>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u> <u>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u> <u>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u> <u>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u> <u>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행위</u> <u>자의 동기·목적·방법, 사회·</u> <u>경제적 파급 효과·결과, 질서</u> <u>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u> <u>와 정황 등을 고려하여 규정에</u> <u>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u> <u>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u> <u>있다. 다만, 과태료체납이 있는</u>
---	---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만원)

미차단율(다운로드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5% 미만	경고
5% 이상 ~ 15% 미만	300
15% 이상 ~ 30% 미만	700
30% 이상 ~ 45% 미만	1,000
45% 이상 ~ 60% 미만	1,500
60% 이상 ~ 75% 미만	2,000
75% 이상	2,500

경우 감경할 수 없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법 제142조 제1항	경고	1,000	3,000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2476